

의안번호	2205154
의 퇴 인	오세희의원
회 답 일	2024. 11. 07.
추 계 번호	24D474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안 제10조의2에 따라 국가 등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40억 3,000만원, 2030년 12억 2,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82억 4,300만원(연평균 76억 4,9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 제10조의2 신설)	34,030	895	987	1,108	1,223	38,243	7,649

- 주: 1.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10조의2 신설)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본 추계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상을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화 뿔개'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지원대상 시설과 의무화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2 제1항(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제5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0조의2 제2항(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신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0조의2 제3항(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신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전용소방시설 설치) 신설	○	-
2	안 제10조의2제2항(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신설	X	기존 유사 시스템 ¹⁾ 의 활용 여부, 시스템 보완 또는 신규 구축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3	안 제10조의2제3항(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신설	X	기존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 및 관련 장비의 추가 구비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
 -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대상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²⁾이지만,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장소의 관리주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비용, ②공동주택 등에 국가 등이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합계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도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1) 한국환경공단,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등 관계기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규정한 실시간 작동 정보 등은 제공하고 있지 않음

2)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총 583명(법인 또는 개인)

- 또한 민간(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에서 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본 추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약 70%³⁾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상을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으로 한정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화 덮개’⁴⁾이고 민간이 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율은 60%로 가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율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60%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⁵⁾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 다만, 적용례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수에 평균 동 수 등을 고려하여 소화 덮개 수량을 산출하고 소화 덮개 단가를 곱하여 산출

3)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운영정보(2024년 7월)에 따르면, 전체 충전소는 361,163개소이고 이 중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소는 241,265개소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소방시설 설치 사례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검색한 결과, 소화 덮개 구매 및 설치 사례가 존재하여 본 추계에서는 이를 활용하기로 함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5%	2.1%	2.0%	2.0%	2.0%

- (소화 덮개 수량)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비치하여야 하는 소화 덮개의 수량은 2026년 16,684개, 2030년 391개로 추정
 -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건물이나 부지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4년 10월 현재 기준 9,180개소이고 충전시설 5개 당 1개의 소화 덮개를 비치하는 것으로 가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전년대비 증가율 10.5%⁶⁾에 따라 추계기간 동안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5,106개소이고 평균 동 수는 2.8개동이며 동 당 1개의 소화 덮개를 비치하는 것으로 가정
 -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전년대비 증가율 0.51%⁷⁾에 따라 추계기간 동안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기존 시설에 소화 덮개를 비치하여야 하므로 2026년 한 해 동안 해당연도까지 누적된 수량 만큼 소화 덮개가 필요하고 이후에는 신규 시설 수만큼 필요

[표 2] 소화 덮개 수량 추정: 2026~2030년

(단위: 개)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누적)	11,209	12,386	13,686	15,124	16,712
	신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1,177	1,300	1,438	1,588
	설치대상 시설 수(a)	11,209	1,177	1,300	1,438	1,588
	소화 덮개 수량 (b=a/5개)	2,242	235	260	288	318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공동주택(누적)	5,158	5,185	5,211	5,238	5,264
	신축 공동주택	-	27	26	27	26
	설치대상 시설 수(c)	5,158	27	26	27	26
	소화 덮개 수량 (d=c×2.8개동)	14,442	76	73	76	73
소화 덮개 수량(=b+d)		16,684	311	333	364	3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3년 9월 기준 8,309개소

7)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5,080개소

- (소화 덮개 단가) 2026년 312만원, 2030년 338만원으로 추정
 -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 2024년 기준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소화 덮개의 단가는 300만원⁸⁾으로 추정되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에 따라 상승

[표 3] 소화 덮개 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소화 덮개	312	319	325	332	3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40억 3,000만원, 2030년 12억 2,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82억 4,300만원으로 추계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율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60%로 가정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소화 덮개 수량(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a)	2,242	235	260	288	318	-
	공동주택(b)	14,442	76	73	76	73	-
	합계	16,684	311	333	364	391	-
소화 덮개 단가(c, 만원)		312	319	325	332	338	-
추가재정소요 ($= (a \times c + b \times c) \times 60\%$), 백만원)		34,030	895	987	1,108	1,223	38,2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충청남도 당진시가 발주한 계약('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질식소화포 구입')을 참고하면, 84개 구입에 2억 5,200만원으로 소화 덮개 단가는 300만원으로 추정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상을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화덮개’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지원대상 시설과 의무화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